

	지침	문서번호		TWI-C116	
		제정일자		2025. 05. 07.	
	유학생 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침	개정일자			
		개정번호	0	페이지	1/3

목 차

제1조	목	적
제2조	정	의
제3조	조	직
제4조	기	능
제5조	운영위원회	
제6조	위원회기능	
제7조	지침의준용	

작성부서		산학입학처		제정일자	2025. 05. 07.
구 분	작 성	검 토			승 인
직 책	팀 장	산학입학처장	교무학생처장	부총장	총 장
서 명					
일 자					

	지침		문서번호		TWI-C116	
			제정일자		2025. 05. 07.	
	유학생 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침		개정일자			
			개정번호	0	페이지	3/3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동원대학교(이하 ‘이 대학교’라 한다.)에 재학하는 유학생의 취업지원을 위해 설치되는 유학생 취업지원센터(이하 ‘센터’라 한다.)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지침에서 ‘유학생’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, 제7호에 따른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이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을 의미한다.

제3조(조직) ① 이 센터에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센터장을 둔다.

② 센터장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행정직원은 총장이 임명하며, 센터장의 지시를 받아 제반업무를 담당한다.

제4조(기능) 이 센터는 유학생의 취업 지원을 위해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국가, 전공, 학년별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
2. 유학생 취업 지원을 위한 국내 업체 및 기관 등과 MOU 체결
3. 산업체 유학생 구인 의뢰 접수 및 취업 추천
4. 유학생 고용을 희망하는 국내 업체 발굴
5. 유학생 구직 희망 조사 및 지도
6. 유학생 취업상담

제5조(운영위원회) ① 유학생 취업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유학생 취업지원 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.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
④ 위원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단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.

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센터 행정직원 1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6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유학생 취업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
2. 유학생 취업지원제도에 관한 사항
3. 유학생 취업지원 운영 결과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유학생 취업지원에 대해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	지침		문서번호		TWI-C116	
			제정일자		2025. 05. 07.	
	유학생 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침		개정일자			
			개정번호	0	페이지	4/3

제7조(지침의 준용)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이 대학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1.(시행일)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